

피담보채무확정후
그 채무인수에 따른
근담보권변경

(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용)

20 년 월 일

채권자 (근담보권자)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(인)
주 소		
채무자		(인)
주 소		
채무인수인		(인)
주 소		
근담담보권설정자 (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)		(인)
주 소		

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아래 표시 약정서(이하 “원약정서”라 합니다)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20 . . 자 채무인수약정서로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.

구 분		1	2	3	4
원약정서		· · · 약정서	· · · 약정서	· · · 약정서	· · · 약정서
채 무 자					
채 무 액	원 금				
	이 자				
	지 배 상 금				
	부 대 채 무				
	합 계				

한국씨티은행
CR-A-826 (2012. 8)

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

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바 있는 아래표시의 근담보권(이하 “원근담보권”이라 합니다.)은 제1조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아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합니다.

원근담보권설정계약의 표시

구 분		1	2	3	4
등기 · 등록	담보권종류				
	관 할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
	접수일자	. . .	. . .	. . .	. . .
	접수번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
	채권최고액				
	물건목록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
	순위번호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

제3조 다른 계약조항의 효력

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, 원근담보권설정계약의 각 조항은 그대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.

제4조 변경등기

이 계약 당사자는 지체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근담보권변경등기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

제5조 계약의 해제

-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나머지 당사자들 전원
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담보설정계약은 자동적으로 원상대로 회복되
는 것으로 합니다.

제6조 비용부담

이 계약에 의한 근담보권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.

제7조 근담보권설정자(또는 제3취득자)의 승낙

근담보권설정자 또는 근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였습니다.

※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()통을 작성하여 채권자, 채무자, 채무인수인 및 근담보권설정자(또는 제3취득자)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.		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계약서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음.	채무자	(인)
	채무인수인	(인)
	근담보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	(인)

■ 근담보물건목록 : 동산담보용

1. 설정계약		년 월 일자 근담보권설정계약서				
2. 공동담보의 표시	등 기	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				
	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	일련 번호	동산의 종류		보관장소/특성	유익적기재사항
	순 위					
	소 유 자					

■ 근담보채권목록 : 채권담보용

1. 설정계약		년 월 일자 근담보권설정계약서				
2. 공동담보의 표시	등 기	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				
	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	일련 번호	채권의 종류	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	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	유익적 기재사항
	순 위					

■부동산 물건목록 및 순위번호

물 건 목 록	순 위 번 호	
	등기상 순위	실제 순위